

■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일정

신청대상자	신청일자	장소	신청방법
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자	2021년 5월 12일(수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•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① PC : www.applyhome.co.kr ② 스마트폰 앱

-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,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,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,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

구분	당첨자 발표	당첨자 서류제출 기간	계약 기간
일정	2021년 5월 24(월)	2021년 5월 26일(수) ~ 6월 2일(수)	2021년 6월 4일(금) ~ 6월 7일(월)
방법	개별조회 (청약 Home 로그인 후 개별조회)	방문 접수 (10:00 ~ 16:00)	
장소	한국부동산원 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'청약홈'www.applyhome.co.kr	당사 건본주택 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-5 번지)	

■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75	84A	84B	합계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5	4	1	10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

청약 대상	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			
구분	창원시 및 경상남도	부산광역시	울산광역시	합계
전용85㎡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	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• 청약1순위 요건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※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. ※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직계존속의 분리된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(소형·저가주택 포함)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 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. •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. • 경쟁이 있는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「청약가점 선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」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 •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

가점항목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 - 배우자 분리세대: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•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혼인관계증명서: 만30세 이전 혼인한 자 (혼인신고일 기준 적용)
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② 부양 가족수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관계증명서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•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18세 이상 ~ 만30세 미만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(2) 만30세 이상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	1명	10	5명	30	
	2명	15	6명 이상	35	
	3명	20	소계	35	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6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통장: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
	6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	
7년 이상 ~ 8년 미만	9	소계	17		
총점		84			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